

제318회 시의회 임시회
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2023.4.19.(수) 10:00

『2023년 1분기』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3. 4. 19.(수)

안 전 총 괄 실

2023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'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'23.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, 13,345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

○ 매매대금 반환 청구 : 매매대금 및 이자 13,345백만원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5770 매매대금반환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사건토지 : 동대문구 전농동 620-179(도로, 416.3㎡), 620-181(도로, 320.5㎡)
- ◆ 청구원인 : 서울시가 무상양여 대상토지를 유상매각하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
- ◆ 판결결과 : 패소
- ◆ 패소사유 :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무상양여 대상인 정비기반시설(도로)이며, 도로법을 적용하여 점용허가 및 변상대금 부과한 것은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한 것임

○ 소송 판결 주요 내용

- 2014년경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시유지 전농동 620-179(도로, 416.3㎡) 및 전농동 620-181(도로, 320.5㎡)에 대해 우리 시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유상매각 하였으나, 해당 토지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97조(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)¹⁾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어 무상양여 대상의 토지였음

1) 제97조(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)

②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,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.

○ 항소 포기 사유

- (소송대리인(변호사) 의견) 1심 판결사항을 반박 · 번복할 근거 없음
- (부서 검토 의견) 1심 판결을 번복할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고, 이미 도로로 전제하고 도로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사실로 인해 항소심 제기할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지극히 미미함

○ 따라서 우리 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림 (항소포기 방침, 도로계획과-3100, 2023.3.7.)

○ 사건 확정 및 원고의 판결금 청구에 따라 이자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지급함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13,345,365,200	
도로계획과	매매대금 반환 청구	배상금 등 (305)	13,345,365,200	'23.3.22..

※ 청구금액 세부 내역

지급대상	총 지급금액 (①+②+③)	① 판 결 금	판결금 이자	
			② '19.8.30.~'23.2.14. (5%)	③ '23.2.15~'23.3.22. (12%)
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경비 사업추진위원회	13,345,365,209	11,260,740,000	1,951,347,410	133,277,799